

#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 번호	4315
----------	------

2025.7.16.  
산업건설위원회

##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발의자: 2025. 7. 8.(화) 백성호 의원

나. 회부일: 2024. 7. 8.(화)

다. 상정일: 2025. 7. 16.(수)

- 제33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부결”

## 2. 제안 요지

가. 제안 취지

-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광양시 녹색어머니회를 활성화하고자 조직·구성·경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주요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안 제4조)
-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교육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 3.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 및 시민의식 제고와 봉사활동을 하는 광양시 녹색어머니회를 활성화하고자 조직·구성·경비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이해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합니다
  
- 다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법률에 의한 지원 근거가 있어 별도의 조례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단체를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조례의 일반·추상적 규범성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 및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16-0114,(2016.6.3.), P31~34 참고】과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재정 지원 등)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4. 질의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 5. 심사 결과: **부결**(출석위원 7명)

- 부결사유: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시설지원도 동 조례 제8조제1항제8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단체를 조례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6.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광양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 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광양녹색어머니회”란 광양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 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지도 및 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6.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